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August 2018

2018 세법개정안 –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관련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국조법 §5)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란 특수관계기업들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에서 체결된 조건이 독립기업들 사이에 체결되었을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 또는 이익 수준을 말합니다.

국조법 제5조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정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할 수 있음

OECD'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과세당국의 거래에 대한 부인 적용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중과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거래의 실제 본질을 결정하고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 간의 거래와 동일한 거래 유형이 독립기업 간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그 거래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교 가능한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징 하에서 실질 거래가 독립기업 간에 동의하는 상업적인 협약의 타당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121-1.125)

이와 같이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실제 거래를 부인하거나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향후 과세 실무상 개정안을 적용할 때 이러한 원칙과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개정안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원칙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세당국이 거래의 합리성 유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개정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특수관계인 간 상업적 · 재무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조건이 경제적 실질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되, 거래의 합리성에 대에 과세관청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상호합의란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과세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해 선택적 고시에서 의무적 고시로 개정하고,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이번 개정안에서는 역외거래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국제거래 외에 거주자 간 국외자산 매매·임대차 및 국외용역 거래를 포함시키고, 부과제척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사기 기타 부정행위	15년	15년
무신고	7년	10년
과소신고	5년	10년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국제거래를 포함한 역외거래 관리에 있어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법인법 §94, 소득법 §120)

BEPS 프로젝트에 따른 2017년 11월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사항 중 국내사업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활동장소(자산의 단순한 구입,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보관, 타인에 의한 자기 자산의 가공 등)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 특정 활동장소의 사업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예외 요건 신설

1. 특정활동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특정활동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인 경우
 2.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활동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 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 종속대리인의 범위에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
 - 종속대리인 판정 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를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으로 명확화

동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을 볼 때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적용 범위 축소 및 종속대리인 범위 확대를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세조약 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28)

현행 국조법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우선 원칙에 관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할 목적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원칙의 의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구분이 다른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국내세법 상 과세권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세법 상 소득구분은 조약과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며,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 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조약상 소득구분은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의4 ④)

현행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납세자가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료제출이 필수적인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 개정안이 적용되면 납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요청 받은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세당국은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작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를 구비/제출하는데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이전가격보고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목적 상 내국세 조정 목적의 이전가격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세계관세기구(WCO)는 최근 내국세 조정 목적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참고 또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연구 14.1, 14.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가격 검토 시점부터 분석대상기업과 동일 제품군·산업군만 포함하는 등 관세 목적 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관세 과세가격 결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후 과세당국 요청에 따라 별도로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이전가격보고서 내용을 준용한 관세 과세가격의 적정성 입증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